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838호 2024. 4. 29.(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1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3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83호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9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686호선) 공사완료 공고— 1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01호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19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24-81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백석동 5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도시 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건축과-14508호(2024. 4. 18.)로 의제 됨을 알리며,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 4. 2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번지 일원 수도권매립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명칭: 수도권매립지 2014 AG경기장(수영장) 용도변경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100,625m²(시설 전체 면적)
- 관리동 층별 세부 조서

구분	용도	면적(㎡)	비고
지하1층	체육시설[수영(구)장]	1,471.77	-
지상1층	체육시설[수영(구)장]	4,879.01	-
지상2층	체육시설[수영(구)장]	1,602.14	-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96.92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96.92	
지상3층	체육시설[수영(구)장]	1,399.56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송병익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백석동)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2024. 4. 18.(신고처리일)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의 권리의 명세 및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수영 (수구)장	-	서구 백석동	-	-	100,625	-	인천시, 서울시, 환경부	-	공유수면 매립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4-8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125 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4.4.29.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4-4-29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52-4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125 (왕길동)	20150806	경인 아라뱃길(수로) 건설로 일부구간을 철거 및 폐쇄하고 신규 우회하는 도로 개설로 인한 도로구간 변경	
2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247-2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532번안길 29-16 (금곡동)	20090710	봉수대로1532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17-2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128번길 16 (오류동)	20090922	단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85-91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826 (가좌동)	20090710	인천에서 옥고를 치르고 부두에서 노역을 한 바 있었던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호를 따 명명	
5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69-13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 71 (가좌동)	20090922	가좌동의 동명을 따서 명명 (가좌동은 이 지역의 원이름인 가재울을 한자로 표기한 것임)	
6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184-5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339번길 22 (대곡동)	20130730	대곡로 시작지점부터 약 3,3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28-4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879-12 (경서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4-4-29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호두산로 42 (경서동)	건물 신축	20090922	도로진행방향에 호두산이 위치하고 있어 호두산로라 명명함	
2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235번길 26 (삼곡동)	건물 말소	20090922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3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883호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4. 2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시책사업명을 조례에 반영하고, 서구사랑상품권 민관운영위원회 간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서구사랑상품권 운영 내실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시책사업인 “혜택플러스 가맹점” 을 “상생 가맹점” 으로 변경하여 운영함에 따라, 명칭 변경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27조)
- 서구사랑상품권 민관운영위원회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규정 신설 (안 제25조)

- 적립금, 사용자 등의 용어를 일관성 있게 정리 (안 제8조, 안 제27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경제정책과, 전화 560-3261, 팩스 560-27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지역 사랑상품권의 시책사업명을 조례에 반영하고, 서구사랑상품권 민관운영위원회 간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서구사랑상품권 운영 내실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사랑상품권 시책사업인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상생 가맹점으로 변경하여 운영함에 따라, 명칭 변경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27조)
- 나. 서구사랑상품권 민관운영위원회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규정 신설 (안 제25조)
- 다. 적립금, 사용자 등의 용어를 일관성 있게 정리 (안 제8조, 안 제2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별첨(「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후단 중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상생 가맹점”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가맹점(혜택플러스 가맹점 포함)”을 “가맹점”으로 한다.

제8조 중 “이용자”를 “사용자”로 한다.

제2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민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상품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27조의 제목 “(캐시백 등)”을 “(인센티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캐시백(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을 “적립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혜택플러스 가맹점의”를 “상생 가맹점의”로, “혜택플러스 가맹점에서”를 “상생 가맹점에서”로, “이용자”를 “사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용자별 캐시백”을 “사용자별 적립금”으로, “이용자가”를 “사용자가”로, “캐시백을”을 “적립금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캐시백”을 각각 “적립금”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경품 등 세부기준(제28조제5항 관련)

구 분	시 기	지급범위	지급방법 및 기준	지급수단
경품 추첨행사	연 1회	전년도 상품권 발행액의 1/10,000 범위	경품권 제공 및 추첨 (상품권 결제액 5만원당 경품권 1매 제공)	적립금 또는 부가서비스 쿠폰
퀴즈이벤트	월 1회	매회 50만원 범 위	상품권 관련 퀴즈 출제 및 정답자 추첨 (1회 50명 한정)	부가서비스 쿠폰 (1인 1만원 범위)
SNS 홍보이벤트	월 1회	매회 100만원 범 위	카페, 블로그, 인스타 등 홍보이벤트 참여자	적립금 (1인 1만원 범위)
가맹점 방문이벤트	월 1회	매회 100만원 범위	가맹점 방문 및 이벤트 참여자	적립금 (1인 1만원 범위)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생략)</p> <p>2. “가맹점”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맹점을 말하며, “<u>혜택플러스 가맹점</u>”은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가맹점을 말한다.</p> <p>3. ~ 7.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상생 가맹점</u>”----- ----- -----.</p> <p>3. ~ 7. (현행과 같음)</p>
<p>제6조(가맹점 등록) ①·②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층구조인 경우 서구지역에 소재하는 점포가 시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사랑상품권 <u>가맹점(혜택플러스 가맹점 포함)</u>으로 등록한 때에는 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p>	<p>제6조(가맹점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가맹점</u>----- -----.</p>
<p>제8조(가맹점 등록 취소)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u>이용자</u> 등이 알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p>	<p>제8조(가맹점 등록 취소) ----- ----- ----- <u>사용자</u>----- -----.</p>

제25조(민관운영위원회 운영) ① ~
 ⑤ (생략)
 <신설>

제27조(캐시백 등)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에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결제금액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캐시백(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혜택플러스 가맹점의 활성화를 위해 서구지역 혜택플러스 가맹점에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제1항의 인센티브와 별도로 결제금액의 100분의 5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별 캐시백 제공 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이용자가 법인 및 가맹점인 경우에는 캐시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중층구조인 경우에는 시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각각 캐시백

제25조(민관운영위원회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민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상품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27조(인센티브) ① -----

 ----- 적립금 -----
 -----.

② ----- 상생 가맹점의 -----
 ----- 상생 가맹점에서 -----
 ----- 이용자 -----

 -----.

③ ----- 이용자별 적립금 -----
 ----- 이용자가 -----
 ----- 적립금 -----
 -----.

④ -----

 ----- 적립금 -----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
가로 캐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적립금-----.

관계 자치법규 발취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개정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상생가맹점”이란 해당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한 자에게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맹점을 말한다.
5. “인센티브”란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적립금 등의 혜택을 말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생가맹점은 가맹점 중에서 별도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다. <개정 2023.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행점이 운영하는 누리집에서 가맹점 또는 상생가맹점 등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3.12.29.>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1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의 발행·판매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사용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상품권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개정 2023.12.29.>

③ 시장은 상생가맹점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인센티브의 유효기간은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신설 2023.12.29.>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 서구공고 제2024-89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686호선) 공사완료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24-16(2024. 1. 22.)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하고 공사 완료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686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 4. 2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경서동 중로3-686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2,184.1m²
- 규모: L=166m, B=13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5. 사업기간: 2021. 12. 27. ~ 2024. 4. 1.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4-901호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1항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 29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사업시행계획(변경내용: 사업시행기간)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소규모재건축사업
- 나. 명 칭: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88-8번지 외 2필지
- 나. 면 적: 3,033.3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재희)
- 나.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 61(석남동)

4. 사업시행 내용 및 규모

가. 내 용 : 공동주택(아파트) 1개동 91세대(지상2층~지상19층)

나. 건축계획

- 1) 대지면적 : 3,033.3m²
- 2) 건축면적 : 1,080.8217m²(건폐율 : 35.63%)
- 3) 연 면 적 : 10,169.5672m²(용적률 : 249.96%)
- 4) 층 수 : 지하1층, 지상19층
- 5)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다. 정비기반시설 계획

- 1) 해당사항 없음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2022. 3. 17.)로부터 60개월

마. 변경내용

- 1)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9. 9. 1. ~ 2023. 9. 1. (48개월)
변경 2019. 9. 1. ~ 2027. 2. 28. (90개월)

Ⅱ.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Ⅲ. 공람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택과(☎032-560-4593)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3, 세민빌딩 3층)

Ⅳ. 의견제출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우리 구 주택과 또는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